

국정감사의 실시 규정 변경

발령대상 : 1건(전문개정)

발령일 : 1997. 3. 25(화)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 개정변경 : 구행정실적심사규정→자치구행정실적심사규정

-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일정사무에 대하여 민선자치
시대에 알맞게 종합평가·비교하여 자치구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의 질적향상과 시민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를 위하여 자치구 행정실적 심사대상, 심사
방법 등을 민선자치시대에 적정하게 전문개정함.
- 심사범위를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위임사무중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자치구에 대한 순위사정 등 심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정함.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실(시청본관 3층) 담당 김철수

문서번호 법무11010-683
 시행일자 1997. 3. 24. ()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철		
법무 담당관	홍		
법제계장	김		
기안	김철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구청장실적심사규정개정규정 반명

1. 서울특별시구청장실적심사규정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반명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7. 3. 25(화).

첨부 훈명안 각 1부. 끝.

(제2안)

훈명제 851 호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훈명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구청장실적심사규정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반명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7. 3. 25(화).

첨부 서울특별시훈명 제851호.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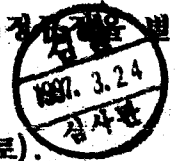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제3안)

수신 자치행정과장

제목 훈명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구청장실적심사규정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7. 3. 25(토).

첨부 서울특별시훈명 제851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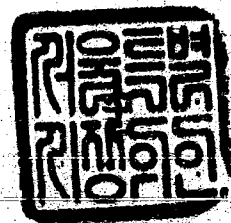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구행정실적심사규정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7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조



서울특별시구행정실적심사규정개정규정안

1. 改正 理由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일정사무에 대하여 민선 자치시대에 알맞게 종합 평가·비교하여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의 질적 향상과 시민에 대한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 행정실적 심사대상, 심사방법 등을 민선자치시대에 적정하게 개정하고자 함.

2. 主要 骨子

가. 심사주체 및 범위를 정하고 계량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 여론조사제 등 별도로 평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

나. 심사범위를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위임사무중에서 다음과 같이 정함 (안 제3조)

- (1) 국가위임사무중 주요사항
- (2) 시 주요시책사업
- (3) 제1호 및 제2호 추진과 관련한 자치구별 특수시책

다. 구체적인 심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함 (안 제5조)

- (1) 각 실·국장이 분야별 업무유형과 내용에 따라 세부기준 및 방법을 정함.
- (2) 실·국별 심사평점은 100점을 원칙으로 함.
- (3) 평점은 자치구간에 차등을 두어 실시
- (4) 분야별 심사는 가산적 평가방법과 감산적 평가방법을 병행하여야 함.

라. 종합평가시에는 각 실·국 및 분야별 평점의 배점을 합산하여 계산함.
(안 제6조)

마. 자치구 심사는 반기별로 종합하여 실시하는 중간평가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바. 각 실·국장의 심사결과를 내무국장이 총괄 수합, 시장에게 보고(안 제8조)

사. 자치구에 대한 순위사정 등 심사결과 처리는 다음과 같이 정함
(안 제9조)

- (1) 창의적이거나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례는 전기관에 확산 시행
- (2) 시장은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기관표창·시상금 및 분야별 표창 실시
- (3) 우수구에 대한 별도의 행·재정 지원

3. 參 考 事 項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6조(국가사무 또는 시·도사무처리의 지도·감독)

나. 예산조치 : '97 예산 반영 (7,000만원)

다. 기 타 : '96 행정실적심사 실시계획(市계획 No. 466, '96. 5.17)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실적심사규정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실적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실적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위임사무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비교 평가하여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의 질적 향상과 시민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치구행정 실적심사(이하 "자치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주체) 자치구 심사는 각 실·국장이 소관분야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계량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평가사항은 이를 별도로 평정할 수 있다.

제3조(심사의 범위) ① 실적심사기관은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위임사무 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실적을 심사 평정한다.

1. 국가위임사무중 주요사항
2. 시 주요시책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추진과 관련한 자치구별 특수시책

② 제1항제2호 규정의 시 주요시책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심사시기) 각 실·국장이 행하는 자치구 심사는 소관분야의 단위업무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연중 끊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방법) ① 각 실·국장은 분야별 업무유형과 내용에 따라 세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실적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실·국별 심사평점은 100점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치를

③ 평점은 반드시 자치구간에 차등을 두어야 하며 동점 평가를 할 수 없다.

④ 실·국장이 행하는 소관분야 심사는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가산적 평가 방법과, 업무처리에 있어 부진·태만·불이행 및 부적법 등 저해요소를 반영하는 감산적 평가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6조(평점) 심사의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각 실·국 및 분야별 평점의 배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심사범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7조(중간평가) 자치구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 실·국장의 심사 평가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① 각 실·국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자치구 심사결과를 매반기말 10일전까지 내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내무국장은 각 실·국장이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이 규정에 의한 반기별 자치구 심사평점은 매년말 이를 총합계하여 자치구의 순위를 사정하고 이 순위에 따라 시장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창의적 사업 등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례는 전기관에 확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치구 행정실적심사와 관련하여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표창·시상금 및 분야별 표창을 실시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심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표창 방법 및 부상은 서울특별시표창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 전화 02) 731-6226 / 전송 731-6526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시청본관 3층) 담당자 : 선현규

문서번호 행정 13010- 359

시행일자 1997. 3. 18

(경유)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	법무담당관	3	지	
결	일자	1997. 3. 18	시	
접	시간		결	법제계장 <i>선현규</i>
수	번호	1068	재	
처	리	과	공	
리	과		합	
담	당	자		
당	자			

제목 훈령 발령 의뢰

1. 부시장 방침 제353호('97. 3.17)와 관련입니다.

2. 훈령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실적심사규정개정안"을 따르불임과 같이 통보
 하니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발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실적심사규정개정안" 방침문 사본 1부.

2.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실적심사규정개정안" 원본 4부. 끝.

자치행정과장 *이영, 이종*